

주택관리규정 개정(안) 신·구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4조(입주자의 의무) ① 입주자는 대학이 정한 주거시설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입주자는 여하의 경우라도 주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.</p> <p>(신설)</p> <p>③ 주택구조는 입주자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시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주택내에서는 소란행위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.</p> <p>⑤ 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예견될 시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24조(입주자의 의무) ① 입주자는 본 대학이 정한 주택관리 규정 또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입주자는 제1항에 의한 규정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로 배정받은 주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입주자는 배정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사용대차, 임대차, 일시적 사용의 목적으로 입주자 이외의 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.</p> <p>④ 주택구조는 입주자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시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주택내에서는 소란행위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.</p> <p>⑥ 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예견될 시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입주자 이외 타인에게 인도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</p> <p>사전 승인에 대한 예외 신설</p>